

『구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의 환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지원 가능한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, 사업 악용 방지를 위한 단서 조항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 수정 및 추가, 단서 조항 신설(안 제8조)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비의 환수 인용 법령 변경(안 제11조제1호)
 - (현행)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
 - (개정)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
- 사업비의 환수 요건의 사업지연 기간 구체화(안 제11조제2호)
 - (현행) 일정 기간 이상 → (개정) 6개월 이상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장 선정 방법 변경(안 제13조제2항)
 - (현행) 위원장은 시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
 - (개정) 위원장은 부시장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,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상위법 「지방재정법」의 개정과 신설 법령인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현 조례를 정비하고, 사업을 악용하는 경우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사업 지원 기간 구체화를 통한 사업비의 환수 요건을 명확히 하는 조항 등의 내용을 볼 때 <마을공동체 만들기>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